



제329회 임시회

2014.04.1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4년 03월 31일
- 회부일자: 2014년 04월 02일

### 3. 제안이유

-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학교폭력예방대책과) 삭제와,
- 학생 야영·수련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고,
-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하부조직 중 보령교육원 및 제주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분리하는 한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4.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 중 존속기한(2014.2.28.)이 도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삭제함(안 제6조제2항)
- 나.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위치와 원장의 업무를 변경함(안 제 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호)

- 1)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위치 중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 13길 14-17을 삭제하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의 위치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를 추가함.
- 2) 원장의 업무로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조직 중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분리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을 설치하고, 설치 목적 및 위치, 원장의 업무를 정함(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을 삭제함(안 제47조, 제50조, 별표4)

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41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5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호, 제29조, 제32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2항)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삭제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재편,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재편 및 신규설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 한시기구로 설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존속기간 만료(2014.2.28.)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 학생 야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면서, 원장의 업무에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조직 중 2003.7.1.개원한 임해수련 운영부와 2014.3.1.부터 운영하는 제주교육원의 조직 및 예산 규모 본원과의 거리 등을 감안,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분리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1)”을 설치하고 원장의 업무를 정함.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됨.

---

1) 2012.3.7.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의 내용 중 직속기관 운영 승인

##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14.2.13.] [법률 제12394호, 2014.2.13.]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89호, 2013.12.4.]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